

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
번 호

2988

이소라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비례대표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,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☐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, 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(에어컨 실외기, 고성방가 등)이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령이 미비한 상황입니다.
- ☐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유발 생활소음 및 진동을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 간 갈등 예방하고 주거환경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- 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